

논문

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송준용¹⁾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 가. 보상금제도 발생경위
 - 나. 연구방법
 - 다. 선행연구조사
2. 도서관보상금제도
 - 가. 보상금제도 현황
 - 나. 과금 장치 설치현황
3. 쟁점사항
 - 가. 쟁점내용
 - 나. 쟁점일지
 - 다. 쟁점내용 검토
4. 쟁점사항 해결방안
5. 맺는말

1)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과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표로 파견근무 중.

1. 들어가는 말

현재는 인터넷정보의 홍수시대로 변화되었고,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면서 국가간의 지식의 경쟁체제로 돌입되었다.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도 인터넷정보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지식정보 확보에 몰입하게 되었다. 무절제한 인터넷정보가 홍수를 이루다보니 가공되어 정제된 지식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도서관도 디지털시대에 인터넷정보에 뒤지지 않는 정보를 갖추기 위하여 콘텐츠 확보에도 많은 노력하였고,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위해 책자자료를 디지털자료로 변환시켜 이용시키다보니, 저작권보호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의 노력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쉽게 불법복제로 유통된다면 지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학문도 발전이 어렵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을 처음 다루게 된 시기는 1986.12.31(법률 3916호 제 28조) 개정할 때 도서관 소장자료를 복제가 가능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1.12.(법률 6134호 제 28조 2항)에 타도서관으로 디지털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때까지는²⁾ 도서관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이용의 개념에 한하여 다루고 있어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디지털자료에 대한 이용방법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후 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자료 중에 저작자 동의없이 구축된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 보상금제도 발생경위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형태로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된 계기는 1997년 11월 IMF로 인하여 정부에서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었고, 부양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일자리제공사업으로 도서관에 일용직을 많이 쓰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큰 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잉여인력을 활용하

2) 저작권법 제 28조 2항[2000.1.12 법률 6134호]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여러 도서관에 이용시키려 하다보니 저작권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뒤늦은 2003.5.27.(법률 6881호)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미 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자료를 인정해주고 전자도서관 구축, 디지털자료 저작권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도서관보상금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도서관이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웠지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로 형태변화를 하여 이용시킨다고 해서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저작권법 개정을 반대하는 도서관현장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법은 개정되었다.

도서관보상금제도는 1년의 시범기간(2003.7.1.~2004.6.30.)을 거쳐서 2004.7.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저작권재산권자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단속을 하면서 도서관과 분쟁은 시작되었다.

저작권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가 담고있는 전자도서관 구현, 저작권보호라는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제도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도서관간 상호대차장해요인으로까지 작용되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집단거부로 이어졌고³⁾, 공공도서관도 제도수용에 불편함이 많아 보상금 협정체결을 기피하다보니 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제도를 만든 측이나 제도를 수용해야하는 측간 대립관계는 지속하고 있다.

나. 연구방법

도서관보상금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대학도서관과 저작권관리단체와의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고, 도서관계간에도 갈등도 거치는 상황에 정책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좋을까를 연구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보상금제도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문헌조사, 도서관현장 의견청취, 전문가의 의견수렴,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전개 방법은 우선 도서관보상금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보상금제도 문제에 대한 쟁점일지, 쟁점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문헌적, 사실적 입증을 통하여 실현가능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상금제도의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안별로 법적 판단이 해결책이겠지만,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등도 증폭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제도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3)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2004.8.3.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다. 선행연구조사

우리나라의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고, 저작권법과 신탁기관인 사단법인 일본복사권센터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흔적이 나타난다. 법률조항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제31조로 같은 조항이다.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법이 법을 복제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게 될 정도이다.⁵⁾

제도를 둘러싼 연구도 여러 학자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만 연구로 끝난 것이 아쉽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 홍재현(2004)은 도서관간 복제·전송에는 면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수현(2004)은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수용 표준안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유상과 무상으로 복제가 가능한 사항을 제시한바 있고, 조순영 외(2004)는 정책과제로 학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지영(2004)은 도서관의 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을 검토하였다. 성균관대 도서관에 근무하는 임경훈(2004)은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조문별로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근무 중인 송재학(2007)은 보상금제도를 현실적인 차원을 떠나서 법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제도의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임경훈과 송재학의 두개의 석사학위논문을 비교해 볼 때 연구자가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시각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연구자의 입장인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김인자(2005)는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도서관 이용자인식의 연구를 한 바 있고, 반면에 저작권에 대하여 가장 많이 연구논문을 제출한 정경희(2007)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을 오픈엑세스시대 상황에 대비하여 비매품은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2007)에서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일본의 저작권법 제 31조 (도서관등에 있어서의 복제) (최종개정 : 2006.12.22. 법률 제121호)

제 31조 도서, 기록 그 외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그 외의 시설에서 정하는 것(이하 본조에 있어서 「도서관 등」 이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으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도서관등의 도서, 기록 그 외의 자료(이하 본조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 라고 한다.)를 이용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조사 연구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분(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개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의 복제물을 1인당 1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외 이것에 준하는 이유에 의해 일반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5) 일본복사권센터, <http://www.jrrc.or.jp/about/index.html>

2. 도서관보상금제도

가. 보상금제도 현황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원문DB를 구축한 도서관이 자료를 출력하거나 타 기관에 전송할 때 저작권료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로서,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5조 : 보상금 지급단체 규정, 저작권법 제31조 :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도이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기관만 저작권관리단체에 협정을 맺으면 되지만, 저작권법 31조에 파일을 전송할 때와 출력할 때 보상금을 지불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보상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타 도서관이 구축한 원문을 자관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체결 기관수는 648개관으로 원문 제공하는 6개 기관 보다 대형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을 소속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약정을 맺은 도서관이 훨씬 많다.

<표 1> 보상금 협정가입기관

| 구분 | 대상기관 | 체결기관 | 참여율 | 납부방식 | |
|-------|-------|------|-----|----------|----------|
| | | | | 기관납부 | 이용자납부 |
| 공공도서관 | 515 | 224 | 43% | 96 | 128 |
| 대학도서관 | 438 | 143 | 33% | 82 | 61 |
| 전문도서관 | 589 | 281 | 48% | 276 | 5 |
| 계 | 1,542 | 648 | 42% | 454(70%) | 194(30%) |

※ 자료제공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 제도는 2004.7.1부터 시행되었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작권신탁기관으로 지정받아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기관납부방식(과금장치 없이 포괄계약)과 이용자납부방식(과금시스템 설치) 두 가지가 있다. 보상금의 기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며, 2008년도의 보상금 기준(고시 제 2008-4호 : 2008.3.13)은 다음과 <표 2>와 같다.

<표 2> 도서관 보상금 기준(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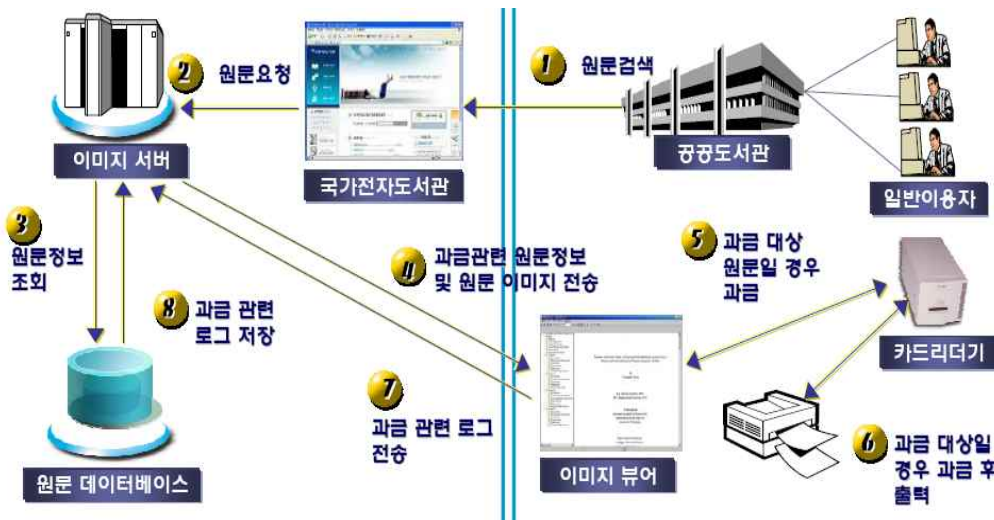
| 구분 | | 출력 | 전송시 |
|-------|-----|--------|-----------|
| 단행본 | 판매용 | 1면당 5원 | 1파일 당 20원 |
| | 비대용 | 1면당 3원 | -(0원) |
| 정기간행물 | 판매용 | 1면당 5원 | 1파일 당 20원 |
| | 비대용 | 1면당 3원 | -(0원) |

구축한 원문을 모든 도서관에 제공을 하기 위하여 협정체결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기관이며, 소속기관 자관이용자만을 위한 협정체결기관은 법원, 한국영상자료원, 연세대학교 등이 있다.

나. 과금시스템 현황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장치설치조건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저작권법 시행령 제 13조4항에 시스템적으로 이용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금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과금시스템 구조는 <그림 1>6)과 같다. 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협약을 체결하고, 원문을 보고자하는 기관의 지정 PC IP를 등록(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PC의 MAC Address를 등록하는 방법(국회도서관)도 있다. 매월 이용실적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제출하면 원문을 제공받은 기관은 협회의 청구서가 오면 입금하면 된다. 이용도서관은 자관의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관리자 화면으로 조회가 가능 하다.

원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는 지정 PC, 프린터에 카드 키를 설치하여 보상금 및 인쇄비를 결제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그림 1> 과금시스템 구조(국립중앙도서관)

원문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구축한 원문에 레코드별로 보상금 대상 유무를 기록 관리해야 하고, 협정기관(원문이용기관) IP관리(등록, 수정, 삭제 등)를 관리하고, 등록관리자명, 기관명 등을 도서관별로 관리해야 한다. 이용실적을 복사전송권협

6) 최경호, 도서관보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2003. 12. 10
http://sigak.nl.go.kr/nl/nl_news/vdl_nlnotiV.asp?no=4&page=13&search_str=&mainmenu=6&submenu=4

회 요청 포맷으로 이용내역(과금코드, 이용날짜, 이용시간, 자료유형, 이용형태, 판매유무, 이용도서관명, 이용도서관IP, 이용자IP, 출력페이지수, 이용요금,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을 보고하면 협회는 해당도서관에 고지서(지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 보상금대상 자료, 열람기록, 파일관리에 대한 기록사항을 파일로 연 1회 협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참여기관 모두 협정을 체결하고 IP를 등록해야 하며, 제한된 컴퓨터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3. 쟁점사항

가. 추진경과

도서관보상금제도 이행을 둘러싼 관련기관간의 쟁점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3.05.27. 저작권법(법률 6881호) 개정 도서관보상금제도 신설
- 2003.07.01.~2004.6.30. 도서관보상금제도 시범실시
- 2003.10.15.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저작재산권자단체 지정(문화관광부)
- 2004.06.18.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발족
- 2004.07.01. 도서관보상금제도 전면시행
- 2004.12.02. 관리센터에서 서울대, 고려대, 광운대에 저작자 보호 촉구
- 2005.11.25. 센터가 분쟁조정신청(신탁중지 처분: 원고적격 없음)
- 2006.01.31. 관리센터에서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저작권침해 고소(7.27. 협의 없음 처분), 고등검찰청 항고(2007.04.20 기각 처분 결정)
- 2006. 8.21. 서울대를 센터에서 저작권침해 고소(12.14. 증거불충분 협의 없음 결정)
- 2007. 7.16.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보상금제도 조정 협의
- 2007.10.11.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명칭 변경
- 2007.12. 6.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기획단으로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협조 요청
- 2007.12.26. 기획단에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의견 수렴
- 2008. 4. 1. 기획단에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제도 의견 교환

나. 쟁점내용

보상금제도를 둘러싼 도서관측의 제도개선, 법령 개정관련 쟁점사항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도서관보상금 관련 쟁점사항

| 쟁점사항 | 관련법 | 문제점 |
|-----------------------------------|----------|--|
|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명칭변경 | 제25조 |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이 보상금을 받는 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
| 보상금제도 이행단체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 시행령 제13조 | 수입에 의존한 저작권단체로서 불공정성여지가 많고, 계약 방식 중 포괄계약은 저작권료로 배분 가능성이 없고 세금의 성격이 강함. |
| 과금 장치 설치비용 추가부담 | 제25조 | 보상금 징수액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고 일선 도서관의 추가부담 비용발생 |
| 디지털자료 이용범위가 도서관 안으로 되어 있음 | 제31조5항 | 대학도서관 경우 캠퍼스 내 이용은 불법성이 있는 바 현실과 괴리 |
| 도서관간 상호대차시 보상금제도 제외 | 제31조2항 | 도서관간에 상호대차방법은 FAX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Ariel불가 판결로 협력에 장애 |
| 학위논문을 보상금제도에서 제외 | 제31조5항 | 비매품 자료도 저작권료 지불필요성? |
| 약정서의 불인정 | 제25조5항 | 도서관이 저작권단체에 예속(협정서, 이행각서 등) |
| 학위논문 보상금을 대학도서관 연합회측에 신탁기관으로 지정요구 | 제25조5항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만 지정으로 독점 |

다. 쟁점내용 검토

1) 부가업무 발생으로 보상금제도의 거부 및 기피

약정서체결, 이행각서 등은 대부분 도서관은 관공서로 신탁단체와 종속관계를 맺는 것을 기피하여 참여율이 <표 1>과 같이 평균 42%로 절반도 안된다. 외국도서관에서에서는 도서관간 원문복사서비스를 받을 때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과는 달리 차이가 많고,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도서관이 보상금을 내야하는 불평등함이 있고, 명칭자체가 도서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내라는 세금징수기관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다. 불법복제 방지장치를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3항까지 나열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1인1부 복제 시 도서관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장치 ②도서관내 이용자에게만 열람하도록 접근제한조치 ③도서관이외 이용 시 확인가능 조치 ④판매용 전자기록매체 방지조치 등이다. 이 조항은 도서관이 범법을 많이 한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어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가하는 것 같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임을 감안할 때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조항이며, 상업용 DB에서는 DB이용 후 파일로 저장하여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과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다.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DB제공도서관은 DRM(Watermarking 등)을 개발해야 하고, 보상금정산을 위한 과금장치를 개발해야 하며, 원문DB에 대한 서지관리, 이용로그관리를 해야 한다. DB이용도서관은 과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기관 납부 시

제외), 프린터 카드 키를 도입해야 하고, 고지서에 따른 정기적인 입금(목록, 금액 등)을 해야 부가업무가 많다.

2) 관례화된 도서관운영 습관과 저작권법과의 충돌

디지털도서관 구현의 명분으로 저작권법 내 도서관 소장 5년 이상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가능(2003.5.27. 법개정 이후)이라는 면책조항이 신설되면서 판매중인 도서까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되다보니, 오래전부터 관례화되어 온 도서관이용자가 1인 1부 자료복사라는 이용습관도 도서관보상금을 내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에게 추가부담을 주게 되었다. 도서관내 복사시설을 대부분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서관내 이용자가 인쇄 자료를 복사하여 보상금을 내야하는 형편이 되었으며, 어떤 자료를 누가 얼마나 복사했는지 과금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포괄계약(기관계약)이라는 약정방식을 택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포괄계약 방식은 도서관내 복사기에서 복사하는 양적 규모로 매년 징수하는 제도로 셀프복사기와 유인복사기를 구분하여 평균 복사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포괄계약방식(기관계약)은 복제기록이 남지 않아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상 복사행위를 합법화시켜주었다고 하지만, FTA조약이 발효되면 국제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서관 자료 1인 1부 복사 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저작권법 규정을 확대해석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외국자료 복사, 개인의 노트 등 저작권과 관계없는 자료복사는 보상금기준 수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서관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복사비, 인쇄비 등 이외 추가부담이 되는 보상금은 이용률 감소요인이 된다.

1인 1부 복사라는 것은 단행본 복사를 고려하여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단순한 자료 복사일 때 보상금 지불은 도서관 설립목적과 배치되며, 비매품자료는 출판목적과 다르게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다. 연구자들이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에 인용한다든지, 영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논문인용 출처를 밝히고, 개작하거나 변경, 가공하는 것은 금지시키면 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 보상금을 지불토록 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단행본은 대출해서 이용하고, 부분복사일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시키고 있으며, 단행본의 전권복사는 금지하고 있다.

유수현(2004)은 대학도서관 저작권 수용정책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저작권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영국저작권허가청(CLA)에서도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학술잡지는 아티클 단

위로 복사가능, 단행본은 5% 이내로 복사가 가능하다. 일본복사권센터도 허용범위를 전체의 30%이내 또는 총복사량 60쪽 이내 중 적은페이지로 20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조항은 너무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인쇄 자료의 복사, 디지털 가능 자료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고, 디지털자료의 복제, 열람, 인쇄, 파일전송 등에 있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간 상호대차에 대하여 디지털자료와 아날로그자료의 복제·전송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3) 저작자에게 보상금 배분에 대한 실효성 의문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많이 지급될 것이고,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일선 도서관들의 참여율이 낮아 징수액이 적고, 저작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금액(협회 분배관리 수수료 30%를 제외하고)은 미미하다<표 4 참조>.7)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적은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법 제31조5항의 “보상금을 당해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보상금 배분현황

| 구 분 | 참여관수 | 징수액 | 대상자 | 분배수 | 징수액 | 분배액 | 비율 |
|-------|------|-------------|------|-----|-------------|----------|------|
| 2004년 | 286 | 19,168,373원 | 72명 | 48명 | 19,168,373원 | 167,860원 | 0.8% |
| 2005년 | 402 | 34,274,597원 | 121명 | 82명 | 34,274,597원 | 314,240원 | 0.9% |
| 2006년 | 524 | 34,934,638원 | | | | | |

※ 최소분배액 3,000원 미만이어서 분배를 안한 것이 대부분임(1인당 평균 470원)

4) 디지털자료 전송시 보상금적용으로 인한 상호대차 위축

저작권법 제31조 3항에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와 5항의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상호대차를 목적으로 하는지 도서관 자료의 1인1부 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7) 도서관보상금협조요청 자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제공. 2007.12.6.

지, 이러한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질의와 문화관광부 답변⁸⁾이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답변내용(상호대차 시 Ariel송신은 불가, FAX는 허용하되 해당문헌이 절판되어 구입할 수 없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일부러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상호대차를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정보화시대에 최신 기술을 사용치 못하도록 만들었다.

5) 학위논문 저작권에 대한 견해 차이

대학도서관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위논문 이용 배포권은 학생보다도 대학 쪽에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석·박사학위논문은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과정에 필요한 연구결과물로 학생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교수의 지도, 후학들의 학문발전을 위해 박사학위논문은 반드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⁹⁾,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절차적 문서류의 일종으로 대학별로 학위수여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권리관계는 대학과 학생간의 관계로 제3자 개입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이 대학생산물이라는 것은 서지사항 주기 시 출판사항에 대학교 대학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산물로 간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형태는 인쇄 자료와 파일(한글 파일문서, MS Word문서, MAC 등)로 도서관에서 PDF형태로 도서관이 재가공하는 형태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정(출판, 특허출원, 저작권기탁)이 있는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③과거부터 학위논문은 일정한 책수(5부~30부)의 책자를 학교에 제출토록 규정에 명시하여 제출해 왔으며, 제출논문은 납본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고 대학도서관간 교환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④대학도서관은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대학 생산 자료를 지식경영 강화수단으로 학위논문을 디지털화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학문발전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 ⑤학위논문이 많이 공개되면, 표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작성자 본인도 공개의 부담으로 좀더 노력하여 작성하게 되고, 논문평가 기회도 되어 학문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⑥세계적 동향은 Copy left운동(저작권 공유), 창작물의 나눔운동(Creative Commons License), 자원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04 1C212- 00066 ; 2004.6.)이 문화관광부로 상호대차서비스방법에 대한 도서관 보상금제도 적용범위를 질의하여, 문화관광부(저작권과-1800; 2004.9.)에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답변

9)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740호]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공유(Open Access)운동, 인터넷시대에 사용자창작콘텐츠인 UCC(User Creative Contents)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은 정부가 건전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에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시대적 정책역행이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학위논문은 학생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고, 보상금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방법에 충분히 알려 저작자인 학생에게 취사선택의 기회를 주어 저작권 기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의 동의서 자체도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과거의 사실 행위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도 학위논문 동의서에 대한 강압적인 환경에서 서명한 상태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대한 항의전화와 민원이 많다고 한다.

정경희(2007)는 학위논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학위논문은 개인저작물이지만, 비매품으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보상금제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학위논문에 이용배포권에 대한 저작권 소재가 법적인 판단으로 판가름된다면 분쟁의 소지도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동의서가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 제출의무로 알고, 저작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했다는 반대의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98%이상 동의율은 자율적 환경이라고 보기에겐 객관성이 결여된다. 학생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도 수정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은 학문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공표를 하여 널리 알려야 할 의무도 있는 환경에서라지만 지식의 가치를 소중히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도 있다.

4. 해결방안

가. 과금장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과금장치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①보상금기준에 파일전송은 비매품은 무료이지만 판매품은 유료로 1파일 당 20원으로서 전송의미는 PC버퍼에 있는 상태를 가정하였지만 기술적으로 복제금지를 하고 인쇄시만 보상금을 받는 체제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시중의 북토피아나 ProQuest사 PDU처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인쇄 시 서버에서 파일을 전부 가져오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파일 전송료는 없애도 된다. 파일 전송료 20원은 소액으로 실효성이 없는 바, 인쇄 시 페이지 당으로 가격결정체제로 바뀌면 제공기관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수 있다. ②보상금은 원문이용기관에서 인쇄 시 제공서버에

서 전자결제(신용카드, 핸드폰결제, 계좌이체 등)를 하면 원문제공기관에서 매월 입금과 이용 내역서를 보내주면 단위도서관에서는 별도의 협약체결이 불필요하고 부대작업(보상금입금, 협약서 체결 등)도 없다. ③원문이용 내역 서지정보(저자명 하나로 구별이 어렵고, 同名異人일 경우 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신탁 받은 저작물에 한하여 관리한다면 쉬울 것이다.

나. 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 자료는 건물 내만 이용(제31조3항)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자(교수, 학생)가 여러 캠퍼스의 연구실에서도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도서관이 소속한 장소로”로 변경해야함이 마땅하다. 도서관 관중간 사정이 다름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다. 다른 도서관 등의 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적용(제31조5항)

보상금협정을 하지 않은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용으로 타 기관에 자료를 보낼 경우 FAX일부 허용은 실행 가능한 일로, 현재 도서관간 FAX전송은 널리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에 따르면 “도서관이 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음 3가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저작물의 일부분의 1부 복제만 허용됨) ②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금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저작권협회의 디지털전송 불가의 결정은 도서관 상호대차를 위축시켜서 도서관간 상호협력이 불편해졌다. 따라서 불법복제 보완장치 설치를 전제로 외국도서관에도 널리 시용하고 있는 Ariel¹⁰⁾과 같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어야 혼돈이 없어진다.

라. 미동의 학위논문 보상금징수를 대학도서관연합회에 신탁지정

학위논문이용동의서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1999년 전후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 5>는 2007년도 1년 동안 서울대에서 서울대 학위논문을 온라인으로 이용한 이용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받은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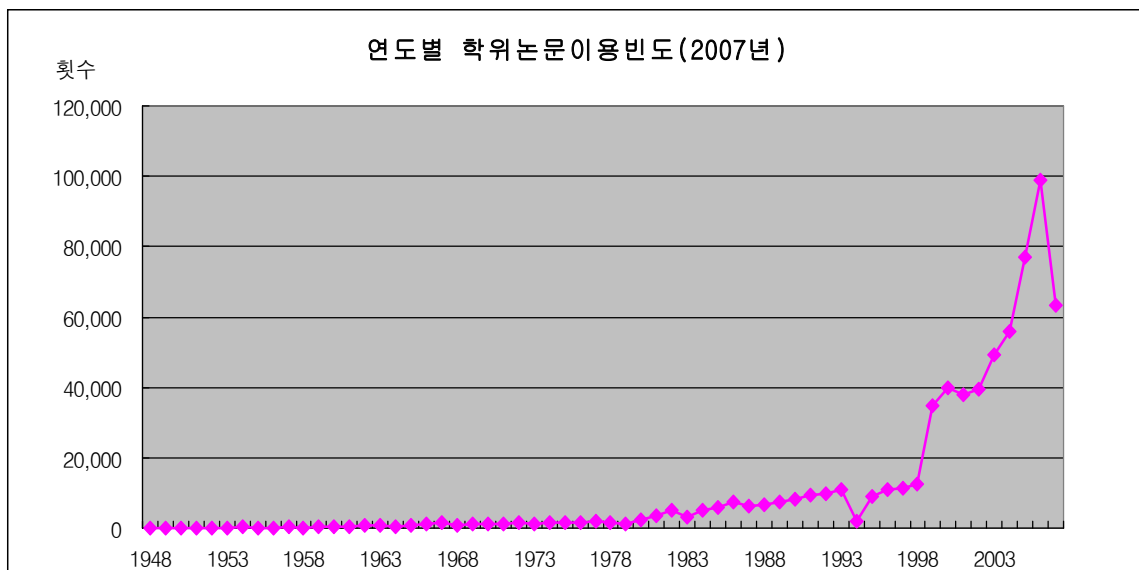
10) 원문을 스캔 하여 E-Mail로 상대도서관에 원문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PC프로그램으로 미국 연구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Infotrieve사가 판매하고 있다.

논문이 대부분(75%)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25%) 미동의 학위논문의 보상금적 용을 전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표 5> 서울대 학위논문 2007년 이용 현황

| 연도 | 횟수 | 비율 | 비고 |
|-----------|---------|-----|-----------|
| 1948-1998 | 161,642 | 25% | 동의서 없는 논문 |
| 1999-2007 | 496,644 | 75% | 동의서 받은 논문 |
| 합 계 | 658,286 | | |

다음 <그림 2>는 2007년 한해 서울대에서 학위논문 이용통계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으로 이용 빈도를 보면 최근연도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11)



<그림 2> 연도별 학위논문 이용 빈도

이런 점을 상황을 감안한다면 몇 가지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①안은 대학도서관연합회에 학위논문만 보상금 위탁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 ②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상금을 고시할 때 주를 달아 학위논문 제외를 명기하는 방안
- ③안은 보상금기준에서 단행본, 정기간행물로 구분하되 디지털자료 중 비매품은 정부간행물과 대학 간행물이 주중임을 감안할 때 판매용 도서만 보상금 적용하는

11) 이용통계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지원실에 이용통계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임. 2008. 4. 3.

방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저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하지 않은 자료의 저작권료를 거둬준다는 것은 저작자의 의도와 관계가 없고 저작권보호 측면의 보상금제도라는 의미와 무관하다.

마. 보상금제도 명칭 변경

보상금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뚜렷한 의미가 없고,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이 수익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명시한 보상금을 저작권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금이란 도서관 자료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다.

바. 과금장치 설치 및 징수체계 개선, 약정서 개선

단순히 타 도서관 원문을 이용하는 도서관이 보상금제도 이행을 위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과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불편함이 많다. 원문을 제공하는 기관만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센터에서 일괄 납부한다면 복사전송권협회나 일선 공공도서관도 편리하게 될 것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자료인쇄시만 보상금을 적용하고, 이용하는 도서관은 원문제공기관과 약정하고, 등록된 지정컴퓨터에 한하여 이용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서관자료 중 디지털화 가능자료 구체적 명시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에 열거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15가지 가운데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 중 발행 후 5년 이상 자료의 복제허용”이라는 예외조항은 저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디지털화가 가능하여 출판중인 도서도 디지털화 할 수 있으므로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됨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소설류나 이론교과서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반하여 보상금이란 소액으로 저작권료를 대신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특권인 반면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권적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여) 구체적 항목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여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 동의를 받은 자료, 비매품, 원본이 훼손되어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절판된 도서 등으로 세분화하여 출판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도와줄 수 있다.

외국의 학술지는 개인이 구독할 때와 기관이 구독하는데 가격이 많이 차이난다. 예를 들면 Science(0036-8075)라는 학술잡지의 연간구독비는 기관과 개인의

구독 시 엄격한 차등을 두고 있다. 개인 구독비는 USD 142, 기관구 독비 USD 710, 학생 구독비 USD 75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관의 학술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비싸게 팔고 있다. 대학도서관도 여러 사람을 이용시킨다는 전제하에 개인구독비용보다도 바싸게 구입하고 있다. 책을 납본받아 디지털화하여 전국도서관에 이용시키고, 소액의 보상금으로 저작권료를 갚음하려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클 것이다. 도서관의 기본사명인 책을 사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펼 수 있지만, 반면에 많은 도서관이 1부 이상 구입한다면 출판기본 손익분기 판매부수 1,000부는 돌파할 것이며, 출판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도서관 장서를 여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보호차원에서 보상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서관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없애야만 책이 많이 팔리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고에 도달할 수 있다.

5. 맺는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성 없는 법이 되면 사문화되게 마련인데,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사회에서 타협과 민의라는 면에 부합하지 않다. 법조항이 사문화되어 사회적 실익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다면 남겨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는 제도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정책조정으로 해결할 과제이기엔 고소와 성명서로 얽힌 감정 때문에 너무 많이 꼬여 있다. 방관하자니 뜨거운 감자이고, 관련부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운영되어 수입창출에서 자유롭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9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지만 2007년도부터는 예산도 끊긴 상태이다. 협회운영을 위해서는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수익 창출필요입장과 제도거부입장의 양면적 체제에선 양보와 타협은 너무 어려운 과제이다. 사립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국립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개인적인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형사입건이 어렵다. 이러한 평행선상이 계속된다면 최종 피해는 결국 이용자의 몫이 된다. 보상금을 기피하기 위하여 디지털화를 자제하고, 타 기관 원문이용을 금지하고, 학위논문이용동의서에 소극적 자세로 임한다면 도서관간 정보교류와 협력활성화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것은 큰 도서관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구축한 원문DB를 이용시키려 함으로써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안을 도출해야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저작권법을 믿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문을 구축하는 것은 중지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구축할 원문 대상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도서관 보상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도서관직원의 저작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외국의 사례보다 한국이 제약이 많지 않다는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도록 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부서, 도서관계, 저작권계 책임자들이 협의체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도서관의 보상금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조항을 개정할 때는 도서관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고, 저작권 침해사례를 일선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위반을 줄이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서관현장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 UK, The Copyright Licensing Agency Ltd, UK About Copyright, [Cited 2008.4.6] <http://www.claco.uk/>
- British Library. BLDSC ; [Cited 2008.4.8] <http://www.bl.uk/>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Copyright Infomation, [Cited 2008.4.8] <http://www.nlm.nih.gov/copyright.html>,
- 김인자. 2005.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2007.11.7.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반대한다!.
- 문화관광부. 2003.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한국: 문화관광부.
- 문화청장관관방저작권과. [Cited 2008.4.8.]저작권텍스트, -처음배우는 사람을 위하여-; 2007. <http://www.bunka.go.jp/jiyuriyo/>
- 송재학. 2007.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신창환. 2002.5.25. 미국 저작권법의 체계와 대외 저작권 정책 연구, 국비장기 해외훈련 연구보고서, 2000. 8. 15-. 문화관광부.
- 오마이뉴스. 2005.10.18 20:31. 문동섭 기자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도서관보상금제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preview/at_prev_pg.aspx?CNTN_CD=A0000287314

- 유수현, 한상완. 2004.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8, No.1.
- 이영아[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 제도. [Cited by 2008. 4. 24.] 한국복사전송권협회 http://www.copycle.or.kr/pdf/설명자료_이영아.pdf
- 일본의 저작권법. [Cited 2008.4.8.]. <http://law.e-gov.go.jp/>
- 임경훈. 2004.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 정경희. 2007.12.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제24권 제4호, p.97~117.
- 井上雅夫 翻譯, 미국 법률집 제 17편, 1998.05.03; 2000.02.15, 저작권법.
- 조순영, 홍재현, 이호홍, 정경희, 이호신, 오의경, 석경임, 신일, 김지영, 서은정,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자원의 개발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최경호. 2003.12.10. 도서관보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국립중앙도서관.
- 최지영. 2004. 도서관의 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저작권법과 도서관 관련 법제와의 연계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5.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정보이용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8 No.1.
-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3.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 p.505~525.
- 日本複寫權センター. 日本複寫權センターの概要, [Cited 2008.4.8.], <http://www.jrrc.or.jp/index.html>